김제시 공고 제2024-423호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우리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김 제 시 장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 3. 2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① 방문 ② 인터넷 ③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 : 김제시청 환경과(신관 4층) 또는 김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인터넷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③ **등기우편 접수**(발송요금 본인부담)

※ [54386] 김제시 중앙로 40,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단, 등기우편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만 인정하며, 일반우편물 접수 시 분실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접수 요망

❍ 선정발표 : 우편 개별발송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신차) 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문의처 : 김제시 환경과(☏ 063-540-3780)

※ 지방세 등(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제한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여야 함

❑ 지원대상

❍ (대　　상)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②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③ 2003.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은 보조금 지원 제한

❍ (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총중량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일반: 대상물량의 70%>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가.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나. 가.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자 중 최초 등록일이 빠른 차순위자 단, 차순위 접수자가 없을 경우 신청기간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우선지원: 대상물량의 30%>**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위반 근거자료 제출) 2.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3.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5등급 해당),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차량 또는 건설기계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 지원금액

○ (조기폐차 기본(폐차시)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차량기준가액의 70%	차량기준가액의 100%

○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 보조금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u>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u>해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 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 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 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지원 조건 상세>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3.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구분		지원기준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3.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장치 부착불가 확인 방법

①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만원)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상한액
(기본+추가, 만원)</th><th colspan="3">지원율</th></tr>
<tr><th>5등급</th><th>4등급</th><th>기본(폐차)</th><th colspan="2">추가 지원(차량구매)</th></tr>
<tr><td rowspan="9">4·5등급
자동차</td><td rowspan="2">①총중량
3.5톤 미만</td><td>승용(5인승 이하)</td><td>300</td><td>800</td><td>50%</td><td>50%</td><td rowspan="2">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td></tr>
<tr><td>그 외</td><td>300</td><td>800</td><td>70%</td><td>30%</td></tr>
<tr><td rowspan="7">②총중량
3.5톤 이상</td><td>3,500cc 이하</td><td>440</td><td>720</td><td rowspan="7">100%</td><td colspan="2" rowspan="7">200%(신차)
100%(중고차)</td></tr>
<tr><td>3,500cc 초과
5,500cc 이하</td><td>750</td><td>1,600</td></tr>
<tr><td>5,500cc 초과
7,500cc 이하</td><td>1,100</td><td>2,400</td></tr>
<tr><td>7,500cc 초과</td><td>3,000</td><td>7,800</td></tr>
<tr><td colspan="2">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td><td>4,000</td><td>10,000</td></tr>
</table>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 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 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 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하며,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함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전기 배터리형, 전기 케이블형, 수소연료전지형 등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 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 2) 지게차 폐기 →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를 확인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보조금 지원

□ (제출서류)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시 관할 지자체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지자체의 예산 등을 감안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소유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사안별 저소득층 차량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지급절차

사업공고 (김제시 홈페이지)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정상가동 여부 자동차 검사	검사결과 제출 (조기폐차대상확인서)
김제시	차량 소유주 → 읍면동	김제시 → 차량 소유주	소유주 → 검사대행업체	소유주 → 김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차량폐차, 말소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보조금 지급
김제시 → 소유주	차량 소유주 (폐차장)	차량 소유주 → 김제시	김제시 → 차량 소유주

신차구매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보조금 지급
차량 소유주	차량 소유주 → 김제시	김제시 → 차량 소유주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시 온라인 검사 도입 안내

○ 현장확인 검사가 용이하지 않은 도서지역 민원 해소 및 소유차주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행 방식에 추가로 온라인 검사 도입([참고 7])**

	① 폐차장 입고	② 차량상태 현장확인	③ 차량상태 확인서 발급
현행	조기폐차 신청 및 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주)	(협회, 공업사, 폐차장, 지자체 등에서 시행)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협회, 공업사, 지자체 등)
추가 (+α)	조기폐차 신청 및 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주)	**② 온라인 검사** 차주가 차량가동 **동영상을 협회 시스템에 등록** → 판독* * 특이사항 있을시 현장확인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 (협회)

❑ 작성 및 신청 안내

1) 조기폐차 신청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붙임 [참고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별첨 1>

③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 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우선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1부(대상자에 한함)

⑥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대상자에 한함)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 차량 소유주 → 공업사 → 소유주 → 김제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자만 해당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출 : 붙임 [참고 4]

＊ 차량사진 4매(전, 후, 좌, 우면) 첨부 **(사진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불가)**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 차량사진 5매(전, 후, 좌, 우면, 차대번호) 첨부 **(사진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불가)**

- **대상차량확인(차량검사소)**
- 대상차량의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 등이 양호해야 함
- 점검 업소명(도장),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요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 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유의사항】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김제시 → 차량 소유주

4) **폐차・말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후 2개월 이내 제출

※ 차령초과 말소, 수출말소,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2개월 이내 미이행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5) **보조금 신청** : 차량 소유주 → 김제시 환경과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붙임 [참고 3]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주(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6) **보조금 지급** : 김제시 → 소유주

- 차량 소유주 통장 입금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7) **추가 보조금 (신차구매)**

-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참고
-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출고・등록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참고 5]

❑ 기타사항

❍ 보조금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문 의

- 김제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063-540-3780]

붙임 1. [참고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3. [참고 2]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4. [참고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5. [참고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6. [참고 5]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7. <별첨 2> 위임장
8. [참고 6] 대상차량 확인 체크 리스트(굴착기/지게차)
9. [참고 7]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시 온라인 검사 도입 안내문

접수번호

[참고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대전화 (차주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 정 기 · 종 합 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보조금 지급 불가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각 1부 3. (법인 또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4. (해당자) 추가 증빙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첨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노후경유자동차 등 조기폐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참고 2]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장치 개발 여부	□ 개발 □ 미개발·장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저소득층 □ 소상공인□	원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중고차	원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하여 지원 가능(단, 상한액 범위내)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서류도착)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 (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후 해당내역에 대해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참고 4]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인항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인결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후・좌・우면) **※건설기계 : 사진 5매(전・후・좌・우면・차대번호)**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확인자 : (인)

_____공업사 (인)

[참고 5]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 (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폐차 관련	등록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별첨 2>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임자_____에게 차량번호_____호 자동차에 대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김제시장 귀하

[참고 6]

대상차량 확인 체크 리스트[굴착기/지게차]

날짜		차량 번호		차종		검사장소	

1. 동일성 확인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동일성 확인	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는 건설기계 **검사증과 일치하고 봉인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사항과 동일함을 확인	차대일련번호 또는 등록번호 동일성 확인	

2. 원동기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원동기 작동	원동기가 정상 작동 되어야 함	원동기의 심한 진동 및 이상음 발생 여부 확인	원동기 작동여부	

3. 동력전달장치, 조향, 제동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주행조향 제동장치	조형장치 및 제동장치 정상작동 되어야 함	주행·조향·제동장치의 전후 움직임, 제동 확인	전·후, 주행 여부	
			주행 중 제동 여부	

4. 유압장치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유압 장치	유압장치가 정상 작동되어야 함	붐, 암, 작동상태와 정상 기능을 확인	유압장치 작동가능 여부	

5. 차체 및 하체부

[굴착기]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1) 트랙 및 롤러 (궤도식)	트랙롤러스프로킷프레임 레일 가이드는 심한 변형이 없을 것	각 부품들의 파손 등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운행 가능 여부	
2) 휠·타이어 (바퀴식)	차축의 외관 및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을 것	차축의 외관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손상 및 장착 여부를 확인	차축외관 및 타이어 손상이 심하여 정상 기능이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	
3) 턴테이블	회전 가능 및 회전 후 정지가 되어야 함	턴테이블 회전상태 이상 유무 확인	선회 작동 및 제동이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	

[지게차]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휠타이어	차축의 외관 및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을 것	차축의 외관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손상 및 장착 여부를 확인	차축외관 및 타이어 손상이 심하여 정상기능이 불가능할경우 불합격	

6. 작업장치

[굴착기]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버킷 등, 붐, 암	버킷 등 붐, 암은 심한 균열과 변형이 없으며 정상 작동이 되어야함	버킷 등, 붐, 암의 정상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	버킷 등 작업용 장치의 심한 균열 및 장착 여부 확인	

버킷	유압가위	리퍼	집게	유압브레이커

[지게차]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쇠스랑 마스트	마스트 및 쇠스랑이 심한 균열과 변형이 없으며 정상 작동이 되어야함	마스터 및 쇠스랑의 정상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	마스트·쇠스랑 상승·하강 작동 확인	

7. 등화장치 및 표지류 확인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등화장치	설치된 등화(작업 등)는 정위치에 부착되어 정상 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부착된 등화(작업등)의 파손·설치상태를 확인	등화(작업등)는 50%이상 정상 부착되어 있어야함	

[참고 7]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SCAR 시스템 담당자 031-689-3073(내선번호 1231)>

□ **준비사항: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사진 5매,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사진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 5매**, 동영상은 차량 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시스템 로그인 (차 주) → 자료 (사진·동영상) 업로드 (차 주)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협 회) → 검사 수수료 입금 (차 주) → 합격 여부 판정 (협 회)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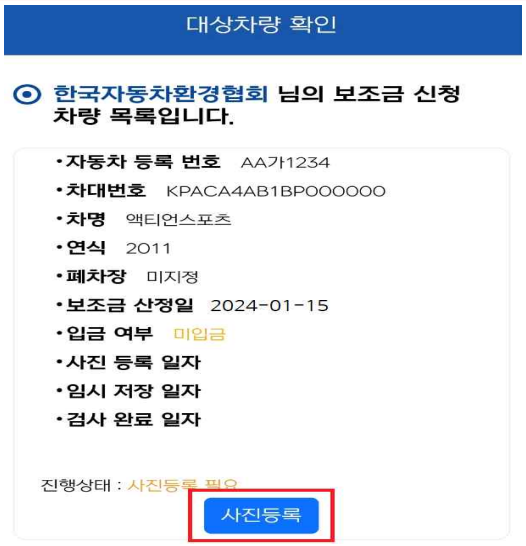	① 신청 내역 확인 → 사진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차량 정보 차대번호 KPACA4AB1BP000000 차명 액티언스포츠 차량 번호 AA가1234
4 단계 (차주) 사진 업로드		① 업로드 → 내파일 → 차량 사진 5매 선택 ※ 사진 5매(전·후·좌·우·차대번호 또는 후면 번호판) ②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 사진등록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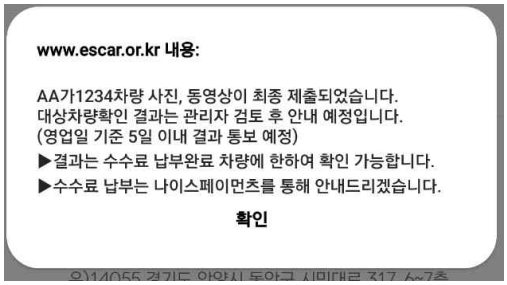 ※ 보조금산정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업로드 가능하며, 보조금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진 업로드 필수 ※ 사진·동영상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전달받아 업로드하는 경우 사진에 저장되어있는 촬영 일자 정보 등이 삭제되어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함
5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업로드 완료 시 알림톡 안내 >

<table>
<tr><th>구분</th><th>시스템 화면</th><th>사용 절차(방법)</th></tr>
<tr>
<td>6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td>
<td>
<검사 합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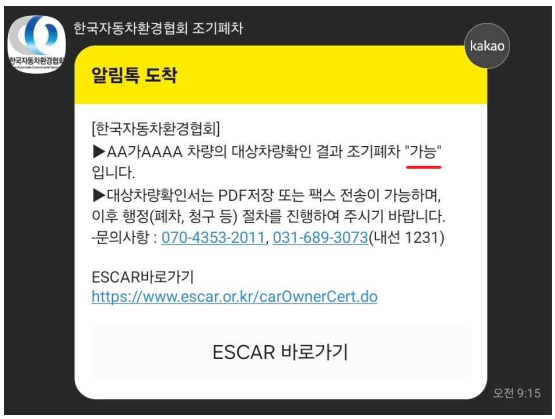

[Web발신]
AA가1234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결제하실 내역 안내드립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상세 내역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조기폐차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납부(가상계좌) 안내 입니다.

*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수수료 납부 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관련 자세한 문의는 031-689-3073(내선번호 1231) 연락 바랍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가상계좌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rid=vKfD2401269042

가맹점 상호: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금액: 19,800원
가맹점 대표전화: 031-689-3073

<검사 불합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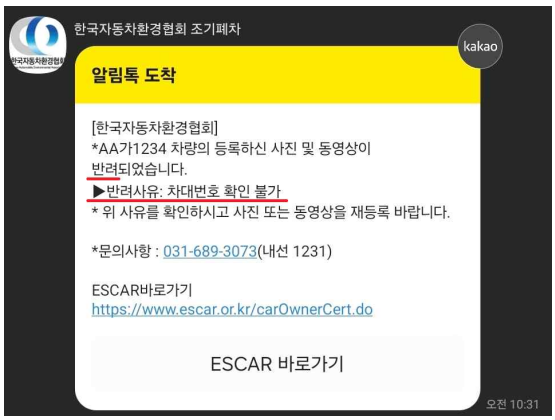

</td>
<td>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사진·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판정 → 결과 안내 및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합격 여부 안내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불합격 여부 안내
- 불합격 사유 안내로 재등록 등 요청
</td>
</tr>
</table>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9,8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①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확인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